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21. 9. 6.(월) / 총 6매(본문2, 참고4)	
공항정책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추진전담반)	담 당 자	• 과장 이상현, 팀장 최종화, 사무관 김대현 • ☎ (044) 201-4328, 4316, 4317	
보 도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7.(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여객 · 물류 아우르는 가덕도신공항 제도적 기반 마련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같은 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9.17일 시행 예정

□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1.5.21~'21.6.30)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본·실시계획)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의 서류(14종)를 규정

- ② (건립추진단 구성)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단 구성
 - * 현재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
- ③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방법을 규정
- ④ (지역기업 우대) 공사·용역 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
- ⑤ (처분·명령)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공항시설법 수준)을 규정
- ⑥ (과징금 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납부 방법(20일 내 납부) 등을 규정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

 <small>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small>	 <small>홍서표씨</small>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전담반 최중화 서기관(☎ 044-201-4316), 김대현 사무관(☎ 044-201-43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① (수 제3조)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절차를 규정

【기본계획 변경사항 및 고시방법】

법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 중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변경 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

- 수 ① 기본계획 변경 대상으로 1.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면적 이상 증가, 2. 활주로의 신설에 관한 사항, 3. 활주로의 길이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②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14일 이상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③ 기본계획의 수립·변경한 경우 해당 내용(건설계획, 변경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則 제2조) 국토부장관 외의 자가 사업시행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대한 절차, 내용 및 서식 등을 규정

【시행허가 절차 및 관련서식】

법 국토부장관 외의 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할 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사업 관계 토지·시설을 국가에 귀속조건으로 허가 가능

- 수 ② 귀속 제외시설은 공항구역 내 1. 공항구역 내 공항시설로서(공항의 유지·보수, 항공기의 점검·정비를 위한 시설, 항공기 급유시설, 전력·통신시설, 소방·의료시설, 이용객 편의시설, 환경보호시설, 항공화물 창고시설,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화물처리시설 등 13종), 2. 공항구역 밖의 공항시설로 규정
 ① 허가신청서 첨부서류(5종)는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내용별 추정 사업비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로 하고, 시행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의 관련서식을 규정

(수 제5조, 則 제3조)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및 관련 서류, 서식 등을 규정

【실시계획 서류, 승인절차 및 관련서식】

법 사업시행자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조달계획, 사업기간 외에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되어야 함 또한, 국토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③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준공확인 시 신고 및 관련사항 고시 생략이 가능함

- 수 ① 시행허가 후 3년 내 실시계획을 수립 국토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1년 범위 내 신청기간 연장 가능
 ② 1. 계획평면도 등 설계도서, 2. 토지등의 보상계획·이주대책, 3. 환경 교통영향평가서·협의결과, ... 12. 기술심의 필요 서류, 13. 인·허가 의제 협의 필요서류, 14. 건설관련 부대공사계획 <14종>
 ③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변경승인) 신청, 승인(변경승인) 방법 및 관련 서식(신청서, 승인서)을 규정
 ④ 1. 건축법상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규모(건축규모 1/10 이하) 변경, 2. 건설예정지역의 5천㎡ 이하 축소, 3. 총사업비 10/100 미만의 변경, 4. 1년 이하 사업기간의 변경, 5. 설비위치 변경 <5종>

4 (수 제6조) 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의 범위)의 지정범위, 방법, 개발사업을 규정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法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함.

수 ① 지정범위 : **1.**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정한 구역 및 그 인접지역, **2.** 「공항소음 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접지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정방법 :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르도록 함

개발사업 : **1.** 기반시설의 설치·개량사업, **2.**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등

(수 제7조)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건설관련 주요업무를 추진단이 수행토록 규정

* 현재 임시조직으로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 전담반’을 운영 중(‘21.3.9~)

【건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

法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고,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함

수 ① **1.**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2.** 신공항건설 관련 기본·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신공항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 **3.**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수 제8조)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건설사업 재정지원 범위】

法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수 ①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⑦ (숙 제9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부여하는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5종)과 이주대책 업무 대행 등 지원사항(2종)을 규정

【민간자본유치사업자 지원 사항】

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그 밖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 숙** ^① 1.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사업
^② 1. 주민이주대책·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숙 제10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또는 인근 지자체에 있는 지역 기업 우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

【지역기업 우대 대상 및 기준】

法 사업시행자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

- 숙** ^① 1. 공사계약: 종합·전문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등
 2. 물품 제조·구매 계약: 공사시행을 위한 기자재·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물의 설계(건축사법), 공사감리 용역계약
^②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숙 제11조, 則 제5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의 처리절차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등 관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별표)을 규정

(숙 제12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별표), 과징금 부과(사전통지, 20일 내 납부) 및 징수방법을 규정

【과징금 부과·징수 등】

法 위반행위에 따른 허가·승인의 효력정지, 공사중지 명령의 처분이 이용자 불편 또는 공익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①대통령령으로 정함.

- 令** ^① 1. (부과방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사전 서면으로 통지
2. (납부방법) 과징금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 수납기관에 과징금 납부

<별 표>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1. 승인없이 실시계획 수립·승인사항 변경 : 시행한 공사금액 1/100 금액(최대 5억원)
2. 수립·승인된 실시계획에 위반한 시행 : 시행한 공사금액 1/100 금액(최대 5억원)
3. (1/2 감액)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3종)
4. (1/2 증액)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3종)